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56 발의연월일: 2024. 1. 15.

발 의 자:안상훈·박덕흠·조정훈

이성권 • 우재준 • 박성훈

김미애 • 조경태 • 이종욱

박상웅・박수영・한지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,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 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 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.

이에 「기초연금법」 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국내에 서 거주했던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 함.

주요내용

가.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함(안 제3 조).

- 나. 국외 소득·재산 및 국내 거주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함(안 제10조).
- 다.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함(안 제11조).

법률 제 호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국외에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중 제3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할 때 국내 거주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방법·절차,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·절차, 제3항에 따른 국외 소득·재산 신고의 내용·방법·절차 및 제4항에 따른 국내 거주사실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
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항에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8호(종전의 제2호) 각 목 외의 부분 중 "인적사항에 관한"을 "범죄경력"으로 하고, 같은 호(종전의 제2호)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금융정보,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

- 2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
- 3. 토지, 건축물, 자동차, 선박, 항공기, 주택 입주권·분양권, 입목재산, 어업권, 양식업권 및 「지방세법」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- 4.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 보훈급여, 공무원연금, 공무원재해보상급여, 군인연금,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- 5.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 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해외금융계좌정보
- 6.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
- 7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정시설 (이하 "교정시설"이라 한다) 및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

른 치료감호시설(이하 "치료감호시설"이라 한다)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

- 9. 매장,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
- 10.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
- 11. 가출,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초연금 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국외 보유 소득·재산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	제3조(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
등) ①・② (생 략)	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
	후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하지
	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
	급하지 아니한다.
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	<u>④</u> ・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
	같음)
제10조(기초연금 지급의 신청) ①	제10조(기초연금 지급의 신청) ①
• ② (생 략)	·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
	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
	할 때 국외에 소득 또는 재산을
	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
	<u>야 한다.</u>
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	④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중 제3
급 신청의 방법 • 절차 및 제2항	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
에 따른 동의의 방법·절차 등	정하는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의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	신청을 할 때 국내 거주사실을
령령으로 정한다.	신고하여야 한다.
<u>③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
	급 신청의 방법ㆍ절차, 제2항에

제11조(조사·질문 등) ① (생략)

-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 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 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에 따 른 확인・조사 또는 기초연금사 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또는 정 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
 는 정보
 - <u>가. 금융정보, 신용정보 및 보</u> <u>험정보</u>
 - <u>나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</u> 13 및 「지방세기본법」

따른 동의의 방법・절차, 제3형	<u>}</u>
에 따른 국외 소득·재산 신글	<u>고</u>
의 내용・방법・절차 및 제4학	<u></u>
에 따른 국내 거주사실 신고 등	<u>=</u>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	<u>Ē</u>
령령으로 정한다.	
에11조(조사·질문 등) ① (현호) H
과 같음)	
②	_
	_
	_
	_
	_
	_
	_
	_
	_
	_
	_
1. 금융정보, 신용정보 및 보험	尌
<u>정보</u>	
<u><삭 제></u>	

<삭 제>

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 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

다. 토지, 건축물, 자동차, 선 <삭 제> 박, 항공기, 주택 입주권 • 분양권, 입목재산, 어업권, 양식업권 및 「지방세법」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 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
라.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 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 보훈급여, 공무원연금, 공 무원재해보상급여, 군인연 금,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 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
<신 설>

<신 설>

<삭 제>

- 2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6조 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 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
- 3. 토지, 건축물, 자동차, 선박, 항공기, 주택 입주권 · 분양권, 입목재산, 어업권, 양식업권 및 「지방세법」 제6조제14호 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u>2</u>. <u>인적사항에 관한</u> 자료 또는 정보

<u>가.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</u> <u>는 정보</u>

나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

관한 자료 또는 정보

- 4.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 보훈급여, 공무원연금, 공무원재해보상급여, 군인연금, 사학연금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- 5.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」 제52조에 따른 해외금융 계좌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 를 받은 해외금융계좌정보
- 6.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
- 7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 정시설(이하 "교정시설"이라 한다) 및 「치료감호 등에 관 한 법률」에 따른 치료감호시 설(이하 "치료감호시설"이라 한다)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 런 자료 또는 정보
- 8. 범죄경력 -----

<u><삭 제></u>

<삭 제>

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 른 교정시설(이하 "교정시 설"이라 한다) 및 「치료감 호법 | 에 따른 치료감호시 설(이하 "치료감호시설"이 라 한다)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다. 범죄경력 자료 또는 정보 | <삭 제> 라. 매장,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

마.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 록 자료 또는 정보

바. 가출, 실종 신고 및 부재 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 분 자료 또는 정보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 ~ ⑥ (생 략)

<삭 제>

<삭<u>제></u>

<삭 제>

9. 매장, 화장 및 장례 관련 자 료 또는 정보

10.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

11. 가출,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 료 또는 정보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